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21. 7. 15.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7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1. 7. 15.(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 7. 15.(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4건. 끝.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7.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2019. 2. 28.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들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 5. 1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제청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전문에서 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규정(제2장 ‘협동조합’ 제4절 ‘기관’)인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규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전문 중 위와 같이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문 생략)

제137조(벌칙) ② 제5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

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정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선거운동’ 부분

-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기준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 역시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선거운동 기간’ 부분

-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의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 기간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위반이 아닌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486등).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적 결사체여서 결사의 자유, 단체 내부 구성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인적 성격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선거운동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이 적절한 것인지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 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와 처벌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수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열선거로 흐르기 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만 금지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정선거행위만 금지·처벌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기간에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선거인 수가 소규모이고 선거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선거에 관한 정보 획득, 교환 및 의사결정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여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비록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회장선거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임의위탁선거로서 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게 되어 예비후보자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바,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보다 그 규모가 크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서 오히려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운동 기간인 20일보다 짧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 대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보다 소규모이기는 하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역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그 법적 규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후보자 상호 간의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가 인정되는 등 그 규율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단지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자의적인 차별인지 여부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 결국 입법자는 각 중앙회가 담당하는 역할 및 사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보 도 자 료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유포에 관한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7.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 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결정주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운용’ 및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여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 해설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 한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그 대상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하여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 도 자 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2020헌바20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범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범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7.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 탄○○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수출신고 없이 여러 차례 시계를 수입하고 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원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 유한회사는 사용자인 탄○○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되어 벌금 ◆◆원 및 추징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의 불복으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의 1심 계속 중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②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라 한다), ③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범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범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2005헌바30 결정, 2013. 10. 24. 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들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

함이 없다.

-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되어 고액의 추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에 의하여 인정되는 ‘ATA 까르네’를 이용한 수입·수출은 간이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일 뿐 통관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아니어서, 그 요건 구비 여부와 일시로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수출 여부를 심사, 관리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출입신고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수입·수출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우리 관세법이 외국 입법례보다 엄격하게 무신고 수출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망적 의도나 관세포탈 등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들의 수출입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당국에 전혀 파악된 바 없는 물품의 수입, 수출이라는 점에서 타소장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2001헌바89 결정례의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무신고 수출입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

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관세포탈이 없는 무신고 수입행위나 관세포탈을 수반한 무신고 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며, 무신고 수출행위의 가벌성이 무신고 수입행위와도 다르지 않다.

- 또한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수입행위와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수입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 관세포탈과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와 그렇지 않은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고,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보다 가볍게 취급하여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

- 오늘날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서 직접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 등을 제대로 선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법인이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표자, 사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신고 수출입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

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점 등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관련하여 몰수·추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로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들은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에서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 적용되는 몰수·추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 12. 26.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법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보 도 자 료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사건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 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1. 7.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수집·운반하여 왔다.
-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이 2017. 4. 18. 법률 제14781호로 개정되면서 제2호가 삭제되었고, 위 개정 조항은 2019. 4. 19.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더 이상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의 삭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8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8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관련조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2017. 4. 18. 법률 제147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 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

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다.
 -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르러 규제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였다. 청구인은 2년의 기간 동안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관계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함으로써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의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
-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일체를 불허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자체는 허용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
 - 임시보관장소는 어디까지나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서, 본래 건설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되는 도중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활용되는 장소이므로, 다수의 건설공사장이 존재하는 대도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인근에 상당수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의 절단을 허용하는 이상 아무리 그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절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 또한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를 허용하면, 배출자에게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건설공사장과 거리가 가까운 임시보관장소에서, 분류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려는 유인이, 다른 한편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에게는 임시보관장소에서 절단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여 분리·선별·과쇄행위까지 행하려는 유인이, 각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보다 달성되는 공익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수행가능한 여러 형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행위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절단’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임시보관장소’라는 특정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행위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반면,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관계자의 직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허용되고 있지 않다가, 2009년 개정으로 허용된 뒤, 2017년 개정으로 다시 금지되었으며, 2017년 개정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